

#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334번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 : 2022년 10월 17일
- 회부일 : 2022년 10월 21일

### 2. 제안이유

- 교육환경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 및 온라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서울형 교육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추진사업 구체화(안 제5조)
- 나.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다. 교육 지원 사업의 대상자, 지원내용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라. 타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별첨 비용추계서 참조)
- 다. 입법예고(2022.7.28. ~ 2022.8.17.)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 의견

###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와 온라인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 본 제정조례안(이하 ‘본 제정안’)은 총 1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안 제1조~안 제4조)은 목적,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본칙에 해당하는 부분(안 제5조~안 제11조)은 사업, 대상, 실태조사, 홍보, 표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칙에 해당하는 안 제12조에서는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음.

### 〈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 〉

조번호/조제목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제2조(정의)	평생교육, 온라인평생교육 시스템, 학습자원, 멘토링 등 용어 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름
제4조(시장의 책무)	목적(안 제1조)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제5조(추진사업)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교육지원, 생애주기별 교육, 보조금 지급
제6조(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품질 관리 및 정보처리)	시스템 관리, 지속적 신기술 개발, 정보처리
제7조(취약계층 교육지원)	차상위 이하, 한부모, 다문화, 학교밖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다자녀 가족 중 셋째자녀 이상 청소년 등
제8조(실태조사)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의견수렴을 위한 실태조사
제9조(공동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과 학습자원 공동 활용 및 협력사업
제10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 추진 및 경품 지급
제11조(표창)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
제12조(시행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나. 조문별 검토

- 안 제1조는 온라인 평생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라인 평생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균등한 평생교육 및 취약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조례의 내용적 범위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이며, 공간적 범위는 자치 단체의 구역에 한정되며, 인적범위는 통상 주민으로, 조례의 목적사항에 규정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인적범위가 규정되어, 목적의 명확한 표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조례의 목적은 “A를 통해 B 달성이 목적”이라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본 제정안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B를 위해 A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으로 오인하기 쉽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수단(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목적(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교육 및 취약계층 교육 격차 해소)을 구분하고, 목적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u>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 및 서울시민의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u>온라인 평생교육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및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 안 제1조 중 ‘공정’은 취약계층에게 평생교육 제공으로, ‘균등’은 평생교육의 접근성을 강화로 목적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이나, ‘공정과 균등’이 실현 외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도 본 조례안의 목적으로 삼고 있음.
    -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 중 교육격차는 교육의 평등(기회평등(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과정의 평등(과정·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해소할 공공의 문제인 것으로 사료되는바, ‘공정과 균등’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는 결국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특별시는 온라인 평생교육의 ‘시행’을 위해 본 제정안을 제출 했는바,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을 ‘온라인 평생교육 시행’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 제1호는 평생교육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여, 법령개정 시 법령과 조례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과 조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게 되는바, 「평생교육법」의 정의를 준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한편, 본 제정안은 평생교육을 규정하는 조례로,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평생교육법」의 규율을 받으며, 법령과 다르게 규정할 수도 없는바, 「평생 교육법」에서 정의하여 본 제정안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동일 규정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평생교육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정안	수정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u>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u> 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안. 1. “평생교육”이란 「 <u>평생교육법</u> 」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2안. < 삭제 >

- 안 제2조 제2호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자원 등을 통합·연계 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음.
- 안 제2조 제2호의 정의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이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포털’은 “온라인 평생교육 시스템”에 미포함되는바, 본 제정안이 모든 온라인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제정안은 ‘온라인 평생교육’을 규정하는 조례이나, ‘온라인 평생교육’이란 용어의 정의를 누락하고 있는바, ‘온라인 평생교육’을 정의(안 제2조 제2호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한 후 ‘온라인 평생교육 시스템’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제정안	수정의견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 신설 &gt;</u></p> <p><u>2.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이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자원 및 지식정보 등을 통합·연계하여 시민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p> <p><u>2. “온라인 평생교육”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평생교육을 의미한다.</u></p> <p><u>3.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이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자원 및 지식정보 등을 통합·연계하여 시민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u></p>

- 안 제2조 제3호 중 ‘학습자원’을 정의하면서 과도한 설명과 중복으로 인해 학습자원의 의미가 흐려지는바,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어색하고 중복된 설명(“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 “이용 가치 있는”) 중 일부를 생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정안	수정의견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u>3. “학습자원”이란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습자에 의해 활용되는 자원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용 가치 있는 각종 교육자료, 학습 콘텐츠 및 서비스, 학습 도구 등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p> <p><u>4. “학습자원”이란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습자에 의해 활용되는 자원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교육자료, 학습 콘텐츠 및 서비스, 학습도구 등을 말한다.</u></p>

- 안 제2조 제4호 중 ‘멘토링’이란 용어는 2개 조문에서 3번 사용(안 제6조 제3호에서 2회, 안 제7조제2항제3호 등 총 3회)되어 사용횟수도 적을 뿐 아니라, 외래어를 순화없이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추후 적정한 순화어로 수정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와 ‘멘토링’ 대안

- 국립국어원은 공공언어를 “넓게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 좁게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정의하고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부 문서를 비롯해 민원서류·보도자료, 법령·판결문, 게시문·안내문 등 ‘공문서’에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한자어와 성차별 표현”을 바로 잡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립국어원은 멘토링을 ‘후원, 상담, 지도’로, ‘멘토’는 ‘지도자, 담당 지도자’로 순화용어로 제시하고 있으나, 본 제정안에서 전달하려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4. “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갖춘 자(멘토)의 학습지도 및 정서 지원을 통해 학습자(멘티)의 역량과 잠재력을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p> <p>5. “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갖춘 자(멘토)의 학습지도 및 정서 지원을 통해 학습자(멘티)의 역량과 잠재력을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p>

#### \* 평생교육국의 멘토링 정의에 대한 의견

멘토링은 현재 서울련에서 지원하는 핵심적 프로그램이나 서울련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며, 먼저 경험한 사람이 뒤따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하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에 비추어 봤을 때 성인 학습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는 학습 방법으로, 용어 정의가 필요함.

- 안 제4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교육환경 변화에 대응,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공정·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를 규정하는 것이나,
  - 서울련 등에 한정한 책무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문장 구조상 '시장이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재차 '시장이 행·재정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의 책무를 명료하게 나타내는 한편, 온라인 평생교육에 대한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은 <u>교육환경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소득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 교육 지원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은 <u>온라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서울시민의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및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

- 안 제5조 제1항 제4호 중 시장이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법」은 서울특별시에 평생 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시장은 평생교육의 보조자가 아닌 사업시행의 주체로 보이는바, 조문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평생교육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5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4. 그 외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u>평생 교육 지원을</u>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5조(추진사업) ① (제정안과 같음)</p> <p>4. 그 외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u>평생교육을</u>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 안 제5조 제2항은 교육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콘텐츠 확보 방법을 제2항의 본문에서도 ‘개발 또는 임차’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에서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수단의 예시적 열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중복적 규정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제 정 안
<p>제5조(추진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u>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임차 등을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직접 개발</u></li> <li>2. 다른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우수 학습 <u>콘텐츠를 임차</u></li> <li>3. 다른 법인 등과의 교류를 통한 학습 콘텐츠 공동 개발·활용</li> </ol>

- 안 제5조 제2항 제3호는 ‘다른 법인’과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인’은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의 교육관련 법인 등은 다수가 있으며,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의 영역과 종류는 광범위하여 제공할 콘텐츠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임.

- 다만, 안 제5조 제3항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고려할 때, 민간교육 법인에게 임차대금을 지불하고 교육 콘텐츠를 임차하고, 이와 병행하여 공동개발을 위해 보조금 지급을 염두해 두고 규정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교육 관련 법인 중 ‘공공 및 민간’은 특별한 의미를 없는 단순 설명으로 보이는바,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평생교육국은 ‘교육관련 공공 및 민간 법인 관련 보조금’을 명시한 이유는 향후 발생할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보조금 조항을 두었고, 공공 및 민간법인은 단순한 예시로 설명하고 있음.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5조(추진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 <u>관련 공공 및 민간 법인 등에</u>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 <u>관련 법인 등에</u>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023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청소년 등에게 임차한 콘텐츠와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예산(약 109억원)을 편성하고 있고, 법령의 위배없이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조례상 근거가 마련되기 전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 2023년 ‘과정별 온라인 콘텐츠 운영’의 세부산출내역 〉

구분	산출내역
온라인 콘텐츠 임차운영	월 약 817,187천원*12개월 = 9,806,241천원
교보재 콘텐츠 지원	801,000천원(기본 1권) + 304,000천원(추가 4권) = 1,105,000천원 - 기본 1권 : 40,050명*20,000원 = 801,000천원 - 추가 4권 : 4*10,000명*20,000원*0.38('22.8.기준 교재이용률) = 304,000천원
이용활성화 및 학습지원센터 등	이벤트, 학습지원센터 운영, 일반관리운영비 등 = 800,000천원

출처 : 평생교육국 자료제공

- 안 제6조의 조 제목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품질관리 및 정보처리’로 규정하는 등 같은 조의 모든 내용을 다 표현하고 있으나,
  - 법제처는 내용의 핵심 파악이 쉽도록 단어나 어절로 조 제목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 제목의 간략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6조(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품질관리 및 정보처리) ① 시장은 시민이 제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구축한 온라인 평생 교육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스템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의 확보, 신기술을 이용한 지속적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축한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스템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의 확보, 신기술을 이용한 지속적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6조 제2항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처리의 목적이 누락되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 또는 자료 축적을 통해 더 유용한 온라인 평생교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목적 외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조문 신설(정보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이용자의 정형 또는 비정형 정보 등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여 학습참여 및 학습활동에 대한 정량적 판단자료와 개인별 맞춤 학습을 제공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도 포기자를 미연에 예방하여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6조 제2항 제1호 중 온라인 평생교육으로 측정하거나 수집할 수 없는 ‘학습태도’를 정보처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국은 학습태도를 접속시간, 접속횟수 등으로 ‘학습태도’를 간접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 ‘학습활동의 적극성’과 ‘학습에 임하는 태도’는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녹화장치 또는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학습상태 및 학습태도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바,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 방지를 위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정형정보·비정형정보 및 빅데이터

- 정형정보 : 성별, 나이(학년), 거주지역 등
- 비정형정보 : 접속시각, 접속시간, 접속횟수, 문의/질문, 진도, 컨텐츠 학습속도 등 사용자가 사용 후 수집되는 정보로, 사전에 파악할 수 없는 모든 정보
- 빅데이터 : 개념상 정의는 정형·비정형 정보의 집합이나, 실제 의미는 정형정보와 비정형정보 간 관계성 파악 등 데이터 분석부터 가치추출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함.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② 시장은 <u>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u>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p> <p>1. 이용자의 기본정보, 정형 및 비정형의 <u>학습이력</u>, <u>학습태도</u> 등 각종 활동이력 정보</p>	<p>② 시장은 <u>온라인 평생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u>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p> <p>1. 이용자의 기본정보, 정형 및 비정형의 <u>학습이력</u> 등 각종 활동이력 정보</p>

- 안 제6조 제3항은 정보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문의 문장은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지시’나 ‘명령’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바, 법제처의 법령용어 사용 기준과 같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시민의 언어생활에 맞도록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권위적인 표현은 적정한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 용어사용 기준(395p 발췌 및 요약)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국민의 언어생활과 시대에 맞아야 한다.(중략) 특정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가 늘어나고 외국어·외래어·신조어 등이 사용되면서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는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며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략)실제 수요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는 고유어나 쉬운말로 순화하여 규정해야 한다. 외래어와 외국어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꾸어 쓸 우리말이 없거나 이미 관행적으로 굳어진 외래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
  - 널리 사용되는 용어라도 권위적·비민주적이거나 성차별적인 용어는 적절한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 안 제6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이 규정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 안 제6조 제4항에서 정보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복적 규정 방지를 위한 조문의 삭제 등 적정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제정안 제6조 제3항의 각 호의 내용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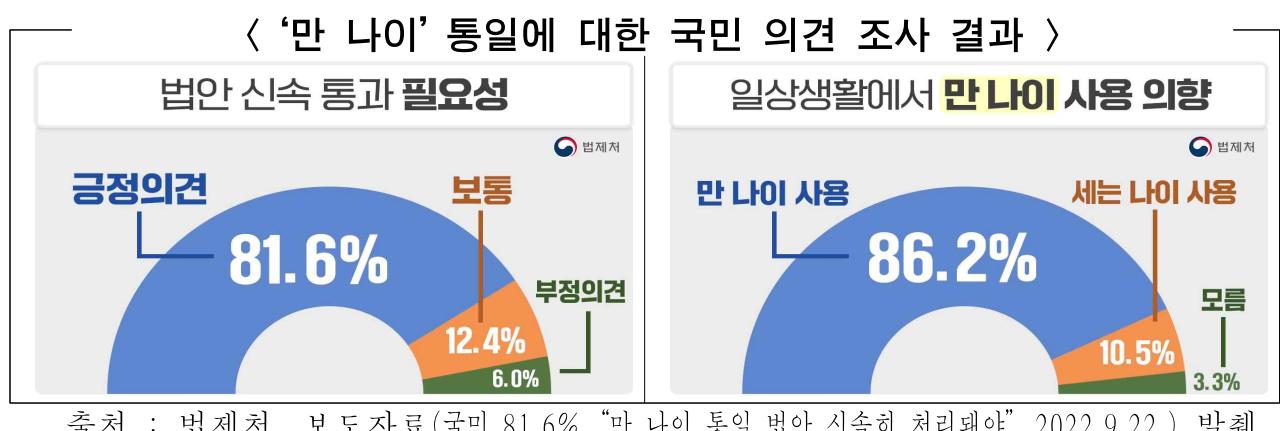
- 안 제6조 제3항 제1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안 제6조 제3항 제2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u>③</u>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p> <p><u>1.</u>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것</p> <p><u>2.</u> 정보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p>	<p>&lt; 삭제 &gt;</p>
<p><u>④</u>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처리되어서는 아니 된다.</p>	<p>&lt; 삭제 &gt;</p> <p><u>③</u>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처리되어서는 아니 된다.</p>

- 안 제7조는 안 제5조의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을 취약 계층 청소년으로 한정(안 제7조 제1항)하고, 지원(안 제7조 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런 사업’을 고려한 조문으로 보임.
- 안 제7조 제1항 본문은 사업대상을 ‘6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사람’이며, 법령 외 조례 등으로 청소년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바, 명확한 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조문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령은 ‘만 나이’로 연령을 표시하여 ‘법령의 나이는 만 나이’라는 당연한 인식이 존재하고 있고,
  -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국민 대부분이 법안의 신속처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본 제정안은 지원 연령의 범위를 ‘만 나이’로 명시하고 있어,
  - 당연한 것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하고, 추후 ‘만 나이’를 규정한 조문에 대한 개정(삭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만 나이’를 명시한 것이 필수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 법령의 연령에 따른 분류

- 「아동복지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7조(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 ① 제5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u>만 6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u>을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의 <u>청소년</u></li> <li>2. 「<u>한부모가족지원법</u>」제5조 및 제5조의 2, 「<u>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u>」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u>청소년</u></li> <li>3. 「<u>다문화가족지원법</u>」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li> <li>4. 「<u>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u>」제2조에 따른 <u>학교밖청소년</u></li> <li>5. 「<u>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u>」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u>청소년</u></li> <li>6.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li> </ol>	<p>제7조(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 ① 제5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u>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u>을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의 <u>아동·청소년</u></li> <li>2. 「<u>한부모가족지원법</u>」제5조 및 제5조의 2, 「<u>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u>」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u>아동·청소년</u></li> <li>3. 「<u>다문화가족지원법</u>」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u>아동·청소년</u></li> <li>4. 「<u>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u>」제2조에 따른 <u>학교 밖 아동·청소년</u></li> <li>5. 「<u>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u>」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u>아동·청소년</u></li> <li>6.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li> </ol>

족의 셋째 자녀 이상의 청소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의 순위로 정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하되,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위에 포함한다.

7.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에 해당하는 청소년. 다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경우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족의 셋째 자녀 이상의 아동·청소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의 순위로 정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하되,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위에 포함한다.

7.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다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경우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청소년

- 안 제8조는 향후 정책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현황, 온라인 평생교육 현황 등)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교육격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전국 학력성취도평가를 통해 연령별, 지역별, 학급 (초6, 중3, 고2)별, 교과목별로 성취도 측정 중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며,
  - 평생교육국은 취약계층의 학력격차를 서울연구원을 통해 조사할 예정임에도 서울특별시의 학생 중 취약계층을 특정하여 학력격차를 평가할 뚜렷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학력성취도평가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격차 조사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협조 없이 서울특별시만의 사업으로 실현 가능한 조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8조 제2항은 공공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또는 교육청·교육지원청 등)는 독립된 법인격체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은 물론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일방의 조례 규정으로 타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요청하더라도 거부·거절할 수 있어, 본 항의 규정이 무의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현황, 시민의 온라인 평생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u>공공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u>에 <u>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u></p>	<p>제8조(실태조사)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u>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u></p>

- 안 제9조는 학습자원의 공동활용과 협력체계 구축을 정의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제외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평생교육국은 중앙정부에 교육부가 포함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를 '정부기관'으로 수정하여 협력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고 있음.

- 정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하고 있어, 안 제9조 제1항 중 중복 규정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하여 중복적 규정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평생교육국에서 제시한 안(중앙정부 → 정부기관)은 시민이 정부기관에 어떤 기관이 속하는지 쉽게 알 수 없는바, 제정안에서 교육행정기관을 추가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9조(공동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u>중앙정부</u> , 다른 <u>지방자치단체</u> , <u>공공기관</u> 및 민간이 보유한 학습자원의 공동활용 및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안	제9조(공동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u>정부기관</u> , <u>공공기관</u> 및 민간이 보유한 학습자원의 공동활용 및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안	제9조(공동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u>중앙정부</u> , 다른 <u>지방자치단체</u> , <u>공공기관</u> , <u>교육행정기관</u> 및 민간이 보유한 학습자원의 공동활용 및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안 제10조 제2항은 시민참여 행사 중 시상 또는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평생교육국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의 적용 없이, 시상과 경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 행위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10조 제2항은 구체적 규정(대상, 방법, 범위 등)이 누락되어, 평생교육국의 시상과 경품 제공은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법적 논쟁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 안 제10조 제2항 시행에 필요한 특별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목적, 경품·시상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서울특별시의회가 예단하여 이를 조례에 명시할 수도 없는바,
  - 차후 평생교육국이 본 제정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보완하도록 하거나, 기능과 역할이 없는 안 제10조 제2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 정 앙

제10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민참여 행사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시상하거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

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이하 ‘목’ 생략)
2. 의례적 행위 (이하 ‘목’ 생략)
3. 구호적 · 자선적 행위 (이하 ‘목’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이하 ‘목’ 생략)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 ·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 방법 ·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이하 ‘목’ 생략)

○ 결론적으로 온라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나, 본 제정안의 제명은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이며, 추진부서는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지원과에서 맡고 있어, 추진체계의 구조를 명쾌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며,

- 평생교육의 목적(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의 이바지 함)과 서울런의 목적(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 및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이 정확히 합치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짐.

○ 명쾌하지 못한 사업추진 체계와 법령과 본 제정안의 목적이 다소 어긋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본 제정안이 서울런 사업에 과도하게 특정되었고, 그 결과 온라인 평생교육(안 제5조)과 서울런(안 제7조)을 별도로 규정하는 조문 체계를 초래하고 있는바,

- 본 제정안이 특수목적의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온라인 평생교육 모두를 포괄하여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의 기준과 방향성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정과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법령과 조례의 목적 부정합’이란 검토의견에 대한 평생교육국 의견

- 헌법재판소는 “헌법 및 관련 법률의 체계에 의하면, 우리의 교육제도는 제도적 측면에서 크게 학교의 정규교육과정과 이를 제외한 평생교육(사회교육)의 2가지로 나뉜다고 할 것이고, 헌법 및 교육기본법상의 의무교육제도와 결부시켜 볼 때, 모든 국민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보충적·보완적 방법으로 평생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판시(현재 2011. 6. 30. 2010헌마503)하고 있음.
- 평생교육에는 학교교육 이후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교육의 보완적 교육과정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서울련은 이러한 부분에서 평생교육의 수단으로 판단됨.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정찬일
------	-----	-------	-----